



미원/위곡/장락통신

배움을 즐기는 어린이
서로 어울리는 어린이
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

477-853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-11 ☎ 교무실 584-7708, 행정실 584-2953, FAX 584-7316

어린이보호구역 내 주·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

안녕하십니까? 본교 모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.

「도로교통법」 개정에 따라 **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·정차가 전면 금지되며,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** (일반도로의 3배, 승용차 기준 12만원)

※시·도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

도로교통법[법률 제 17514호, 시행 2021.10.21.]

제 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중략)

8.시장 등이 제 12조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

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·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(중략)

2021. 10. 22.

미원초등학교장 김 명 희